

의안번호	제 631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6월 일 (제356회)

##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5월 31일

#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엄재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31
----------	-----

발의연월일 : 2017년 5월 31일

발 의 자 : 엄재창·황규철·이의영·김인수·  
임병운·임희무·박한범 의원

## 1. 제안 이유

- 우리도내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가 상위법령의 변경과 기존 귀농인을 위한 지원에서 이를 확대하여 귀농어 및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 명칭의 변경(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근거법령 변경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
- 기존 귀농인이란 표현에서 이를 확대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2조, 안 제5조)
- 상위법에 따라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과 취소 사유 명기(안 제7조 및 안 제8조)

## 3. 조례안 : 볼 임

## 4. 관계법령 발췌 : 볼 임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불필요

## 6. 관련부서 협의 : 농업정책과와 협의

##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 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귀농어업인”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 · 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인의 집” 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

4. “농어촌”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5. “귀촌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어업·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업·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어·귀촌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어·귀촌 육성·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업·귀촌인의 유통·홍보·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귀촌인의 자격, 지원사업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5. 귀농어업·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6. 귀농어·귀촌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7. 그 밖에 귀농어·귀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여금 귀농어·귀촌 육성·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7조(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충청북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사업
  3. 귀농어·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

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자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귀농어·귀촌 정보제공)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의 효율적인 귀농어·귀촌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귀농어·귀촌 정책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상담요원과 귀농어·귀촌상담전용 전화의 설치·운영

-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이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이 영농을 체험하기 위한 귀농인 농업 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착자금 지원) 도지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농어업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
2.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융자

제12조(시설보조)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 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귀농희망자가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정산·지도·감독 등을 해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어업·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어업·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령

###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 · 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귀농어 · 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 · 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